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단2001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나3719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단200111 판결

전문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 종결 2016. 8. 25.

판결 선고 2016. 9. 8.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000분의 51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4. 접수 제83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머176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강제조정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5. 12. 30.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000분의 51지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법원이 2016카정50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E와 혼인하여 원고, 피고 B를 포함하여 F, G, H, I, J를 자녀로 두었고,망인은 2007. 3. 1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77. 11.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한다)를 증여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J의 대습상속인 4인을 포함하여 이하 '피고 B 등 9인'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2135 상속회복 내지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6.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지분(피고 B에 대하여는 51/1,000)에 관하여 2009. 8. 2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 등 9인은 2011. 1월경, 원고가 피고 B 등 9인에게 각 2억 5,000만 원씩을 지급하되, 피고 B 등 9인은 위 2008가합2135 판결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한다)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 등 9인에게 각 2억 5,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머176호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자, 2015. 12. 14. 위 2008가합2135 판결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000 분의 5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 B를 대위하여 행사하고, 피고 B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2008가합2135 판결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2008가합2135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B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B의 위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역시 무효인 지분소유권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1) 강제집행의 불허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판결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이 있었던 것이라 면 그 새로운 약정에 따른 채권 · 채무만 남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577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위2008가합2135 판결에 따른 것이나,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와 피고 B 등 9인이 위 판결에 따른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함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가지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할 것인바, 피고 B

명의를 지분소유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효인 지분소유권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2008가합2135 판결은 유류분 판결로서 형성판결인바, 피고 B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더라도 판결확정과 동시에 피고 B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B 명의의 지분소유권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이 형성판결로서 그 확정과 동시에 피고 B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C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제3자인 피고 C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원고 역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피고 C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석

[별지]

부동산 목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 2201.3㎡
붙.